

## 설 명절 대비 「체불예방·청산 대책」 주요 내용

- ❖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,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집중하고,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도 병행
  - ▲ (사전지도)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, 비상근무 등 체불 예방·청산 활동 강화
  - ▲ (생계안정) 체불 근로자 생계비 신속 응자,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응자제도 안내, 신속한 체당금 지급 등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

### 1. 집중지도 기간 운영 및 현장 대응체계 구축

#### □ 「체불예방·청산 집중 지도기간」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

- 설 명절 전 3주간(1.10.~30.)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
- 휴일·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

#### □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으로 현장 신속 대응

- 48개 전 지방관서에 「체불청산 기동반」을 편성하여 집단체불 발생 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청산 지도
- 고액·집단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지원 → 미청산 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

\* 기관장 지도기준: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고액·집단 체불 발생 사업장

### 2.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

#### □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예방 강화

-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(22,100개소)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사전 지도, 체불사업주 응자 제도 등 안내 병행
- 체불 사업주에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수반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반복·상습 임금체불을 예방

## □ 임금체불 사건 신속·엄정한 처리

- (신속 처리) 신고사건은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여 신속히 체불을 확인하고,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조기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
  - \* 신고사건 처리절차: ①유선확인·청산지도 → ②추가조사·지급지시 → ③미지급 시 사법처리(대지급금 안내 병행)
- (엄정 대응) 재산운용,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

## 3.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 지도

- ❖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'공공부문'과 집단 체불이 빈번한 건설업 ('21.11월 기준 전체 체불액의 19.1% 차지)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

## □ 임금체불 예방·지도 강화

- ① (본부) 관계부처·공공기관(369개소) 및 주요 건설업체(50개소), 공공건설 현장(500개소)에 설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,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독려 등 협조공문 발송(1.10.~)
  - 체불발생 시 우리부로 통보도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 지도

\* 관할 지방노동관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로도 문서 또는 유선 (담당: 044-202-7538)으로 통보

- ② (지방관서) 관내 공공건설 현장\*에 체불예방 지도·점검

\*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현장 500개소 대상

## □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추진

-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,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도
  -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(자치단체)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
  - 특히 발주처가 자치단체·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도 통보하여 체불을 청산토록 지도

## 4.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

### □ 사업주 응자지원을 통한 적극적 체불청산 지원(1.3.~2.28.)

-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,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저금리 응자를 실시해 적극적 체불 청산을 지원

\* 사업주당 1억원, 근로자 1인당 1,000만원 한도

-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응자 이자율 한시적 인하\*

\* (이자율 1.0%p 한시 인하) 신용 · 연대보증 3.7% → 2.7%, 담보제공 2.2% → 1.2%

### □ 신속한 대지급금(체당금) 지급 (1.3.~1.28)

-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설날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

\* 설 명절 전에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지급처리 기간 한시적(14일→7일) 단축

### □ 체불 근로자 생계비 응자 지원 확대 (1.3.~2.28.)

-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응자 이자율을 0.5%p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

\* (이자율 인하) 1천만원 범위에서 연 1.5% → 1.0%로 인하

\*\*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응자(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2천만원 한도)